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,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등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도시계획세를 현행 면제에서 50%경감 조정(안 제5조)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6조)
-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감면혜택 부여(안 제9조)
-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(안 제11조)
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 삭제함(안 제13조)
- 주택경기의 회복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함(안 제14조)
- 주차장용 부동산은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현행 면제에서 50%경감 조정(안 제15조)
-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감면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함. 단 권역별 감면기간에는 차등을 줌(안 제 25조)
-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는 유사 공

- 사와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현행 면제에서 50%경감 조정(안 제27조)
- 기타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,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장함.

4. 참고사항

- 노인복지법 제31조(노인복지 시설의 종류)
- 노인복지법 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
- 노인복지법 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
- 노인복지법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
- 노인복지법 제38조(재가노인복지시설)
- 주택법 제9조(주택건설사업등의 등록)
- 주택법 제10조(공동사업 주체)
-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(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 등)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(정의)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(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(조세의 추정)
-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(조세감면의 기준 등)
-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(정의)
-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(권역의 구분 및 지정)
-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(2003, 10. 16)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안임.
- 구미시세감면조례를 2003. 12. 31에서 2006. 12. 31까지 3년간 연장하고
- 또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세 감면 조례로서 종교단체의 의료업,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,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,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, 법인등의 지방이전,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소세 등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